

# 피복지급규정

[ 규정 제 17호  
제정 2017. 4. 5.  
인사노무부 ]

개정 2019. 11. 15.  
개정 2020. 5. 27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 11. 15.>

1. “피복”이라 함은 근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, 제화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장구류 등 일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가. 근무복: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근무 수행할 때 통상 착용하는 제복

나. 동점퍼: 동절기 현장 근무 직원이 현장 근무를 수행할 때 착용하는 제복

다. 작업복: 현장 근무 직원이 현장근무를 수행할 때 착용하는 제복

라. 방한복: 혹한기 현장근무 직원이 야외 현장근무를 수행할 때 착용하는 제복

마. 제화 및 기타 장구류 등: 안전보호구 관리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되는 안전보호구

2. “지급”이라 함은 피복을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제식 및 지급기준)** ① 피복의 디자인과 색상 등은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근무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정한다.

② 피복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. <개정 2020. 5. 27.>

**제4조(지급관리) <개정 2020. 5. 27.>**

① 소관별 피복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피복관리총괄책임자: 피복담당부서장

2. 피복관리책임자: 각 소속부서장

② 제1항에 의한 피복관리책임자는 개인별 피복 수불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 피복수불대장은 별표2와 같다.

③ 제1항에 의한 피복관리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으로 지급대상 피복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복관리총괄부서에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착용자의 의무)**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로 피복을 변형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이 정하는 소정 사용기간 중 항시 단정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보직변경자 등에 대한 지급)** ① 신규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는 보직에 따른 피복을 지급한다. 단, 피복의 지급 기간을 경과하여 채용되거나 보직 변경자에 대하여는 피복 구

매 불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복을 차기에 지급한다.

②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7.>

제7조(변상) 지급된 피복을 훼손 또는 망실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직무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사용연한 경과피복) 사용연한이 경과된 피복은 지급받은 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제9조(착용기간) ① 지급된 피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여야 한다.

② 피복의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다만, 근무지역,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7.>

1. 동 복: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

2. 춘추복: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

3. 하 복: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

제10조(보존조치) 지급 피복의 수선, 세탁, 기타 필요한 조치는 지급받은자의 부담으로 한다.

<신설 2020. . .>

#### 부 칙(2017. 4. 5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단, 공사설립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(2019. 11. 15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20. 5. 27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지급한 피복은 이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.

〈별표 (제3조 2항 관련)〉 〈개정 2020. 5. 27.〉

## 피복지급기준표

구 分		지급 기준 (벌/년)	지급 대상	비 고
품 목	품 명			
근무복	반팔티 (하복)	1/1	- 임원 및 직원	상의
		2/1	- 운영지원직(안내데스크, 환경미화 직원)	
	점퍼 (춘추·동복)	1/3	- 임원 및 직원	상의
작업복	작업 바지 (하복)	1/1	- 발전소 운전요원 - 공사감독, 환경안전, 사용자 관리 직원 - 영선, 기계, 자재, 설비보수 직원	하의(제전사)
	작업복 (사계절용)	1/2		상·하의(제전사)
	동 점퍼	1/3		상의(제전사)
	방한복	1/3		상의(롱패딩)
		1/3		하의(기모)
경비복	경비복(하복)	2/2	- 운영지원직(시설경비 직원)	상의
	경비복(춘추복)	2/2		상의
		1/2		하의
		2/2		모자(사계절용)
		1/2		벨트, 호루라기 (사계절용)
	경비바지(동복)	1/2		하의
	방한복	1/3		상의(롱패딩)
환경 미화복	환경미화복 (춘추복)	2/2	- 운영지원직(환경미화 직원)	상의
	1/2	하의		
	작업 바지(동복)	1/2		하의
	동 점퍼	1/3		상의(제전사)
	방한복	1/3		상의(롱패딩)
안내 데스크복	안내데스크복 (춘추복)	2/2	- 운영지원직(안내데스크 직원)	상의
		1/2		상의(조끼)
		1/2		하의
	바지(동복)	1/2		하의
위생복	위생복(하복)	2/1	- 운영지원직(구내식당 조리 직원)	상의
	위생복(춘추복)	2/1		상의
	작업 바지(동복)	1/1		하의
		1/2		하의
	위생모자	2/1	- 영양사, 운영지원직(구내식당 조리직원)	모자(사계절용)
	영양사가운(하복)	2/1	- 영양사	상의
	영양사가운(춘추복)	2/1		상의

\*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한하여서는 2벌을 지급할 수 있다.

〈별표 2 (제4조 2항 관련)〉 〈신설 2020. 5. 27.〉

## 피복수불대장

지급구분	품명	수량	지급년월일	수령자			비고
				부서	성명	날짜	